

남정집[행정학박사, 서울시 성동구승진교수, 이그잼고시학원 전임]



남정집 교수님

<2008년 7월20일 시행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시험강평>

- (1) 각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참행정학 편제로 볼때
1편: 3문항, 2편: 3문항, 3편: 3문항, 4편: 3문항, 4편: 3문항, 5편: 3문항,
6편: 4문항, 7편: 2문항)
- (2) 그간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되어서 기본강의를 소화한 수험생이라면 고
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3) 예외적으로 지엽적인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문1. 문15번)
- (4)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제
시해 놓았으니 참조바랍니다(문15번, 다음 주소창에 참행정학 치세요)
- (5) 전년도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낮은편 이라는게 수험생들의 중론이다

[논점이 되지 않는 문제를 문제로 부각시키는 오류] 일부강사는 ④번이라 하는데?

문1.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회귀모형 ② 시계열자료분석
- ③ 투입-산출 분석④ 계획의 평가검토기법(PERT)
- ⑤ 경로 분석

정답 ②. 미래예측기법은 투사(귀납법), 예견(연역법), 추측(직관)이 있다. 인과 관계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예견에 해
당한다. ②는 투사에 해당한다

< 미래예측기법의 유형><참행정학, 화학사, p.492>

(1) 투사(projection)

- ①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경향을 장래로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투사인데, 이는 미래에 대해 결정론적인 주
장을 하며 방법론적 진술이나 유사한 사례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 ② 과거의 경험·기록·사례·문헌조사에 의존하는 귀납적 논리이다.
- ③ 보외적(補外的) 예측이다(과거치를 그대로 연장시키는 추세법).
- ④ 기법으로는 시계열분석, 흑선기법, 최소자승경향추정법, 선형경향추정, 비선형시계열, 자료변환 등이 있다.

(2) 예견(이론)

- ① 예견은 명백한 이론적인(인과관계) 가정을 통하여 예측이 이루어지는 연역적 기법이다. 예견의 본질은 어떤 하나
의 관계에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원인과 결과를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며, 유사한 과정이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추를 탐색하는 것이다.
- ② 예견의 기법에는 경로분석, 투입 - 산출분석, 선형계획, 회귀분석, 시뮬레이션, 마코브곡선, PERT 등이 있다.
- ③ 양적인 과학적 기법이다.

(3) 추 측

- ① 추측은 미래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관적인 진술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정책 관
련의 기획집단에 의한 내재적인 통찰력, 창의력 및 암묵지 등의 미래에 대한 지시적 주장에 의존한다.
- ② 추측의 기법에는 상호영향분석, 실행가능성분석,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등이 있다
- ③ 질적·주관적 기법이다.

<인과관계를 통한 예측방법<새행정학. 이종수 외공저, 제3정판, 대영문화사.p.301>>

예측대상 분야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알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안다고 할때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다. 이들 인과관계는 비교적 정교한 수학적모형일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비계량적인 이론일 경우도 있다. 여기에 속
하는 예측기법에는 회귀모형, 투입 ? 산출분석, PERT, CPM, 계량적 각본 작성, 관련수, 경로분석 등이 있을 수 있

다.

문1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이 아닌 것은?

- ① 자체평가중심의 평가체제이다.
- ②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이다.
- ③ 성과관리 강화이다.
- ④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설치이다.
- ⑤ 국무총리실의 상위평가 기능 강화이다.

정답 ①. ⑤. 논란이 있을수 있는 문제이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답이 결정될 것 같다. 1번과 5번이 논점이 되지만, 최근 분권화나 자율성에 따라 봤을때 5번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미루어 짐작해 본다.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명박 정부 등장시 인수위원회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분야라고 강의때 강조하던 분야이다, 요지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 정책감사를 수행하다보니 업무의 중복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여 감사원의 정책감사기능을 국무총리실에 이관시키자는 내용이었다.

(2) 각 기관마다 수행해오던 자체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다(ex: 한국도로 공사가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7928호 신규제정 2006. 03. 24.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법률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지방자치단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라. 공공기관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제7조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남정집

문1.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설명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은?

· 각종 정치·행정 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가 된다.
· 소위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nation)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
- ② 관리기능적 접근방법
-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
- ④ 역사적 접근방법
-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

정답 ④.

< 역사주의 >

- ①개념 :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 중 역사적 접근이 최근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데, 역사적 접근이란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행정체제의 발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법적 접근법과 어느 정도는 중복되며,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강조되었다.
- ②역사적 접근의 특징
- ㉠인간존재의 순환론에 입각하여 과거와 현재는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자연과학의 적용이 곤란한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과거의 기록이 중요하다.
- ㉢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은 각종 정치·행정 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는 흔히 현대의 정치·행정적 사건들을 자세하게 묘사해 준다.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가 된다. 역사적 접근방법의 기본전제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이 무수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떠한 시기든 인간의 존재는 결코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Isaak, 1981; 강신택, 1981).

문2. 아래 기술된 항목 중 후기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ㄱ. 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에 대한 반전데모 및 강 제징집에 대한 저항 등 미국사회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 ㄴ. 1960년대 중반부터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 걸고 하류층-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 이의 추진에 지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정치학에 대한 비판
- ㄷ. 인간을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고 행정의 원리들을 발견하는데 주된 관심을 기울임
- ㄹ. 사회과학자들은 그 사회의 급박한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대상으 로 삼아야 한다.
- ㅁ.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보다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 며 정책학의 발전과는 무관하다.

- ① ㄱ,ㄴ ② ㄴ,ㄷ
- ③ ㄷ,ㅁ ④ ㄱ,ㄴ,ㅁ
- ⑤ ㄱ,ㄷ,ㅁ

정답 ① . ㄷ, ㄹ, ㅁ 은 행정행태론의 특성에 해당한다

(1) 신행정학은 1940년대 사실적인 행정행태론을 비판하여 1970년대 가치주의에 입각한 이론(후기행태주의)을 의미한다.

(2)신행정학이란 기존의 전통적 행정이론이나 행태론 등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에 이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適實性)과 실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원으로 변모되어야 하고, 무엇을 강조·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자면 행태론에 대한 일종의 반명제(反命題)로서 ‘후기행태론’, ‘현상학적 접근’, ‘탈행태주의’라고도 한다.

(3)기존의 계층제나 관료제이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우선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시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처방성·적실성을 강조하는 가치중심의 행정이다.

(4)1970년대를 전후한 미국적인 상황에서 나타났다(격동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큰 정부론의 입장).

- ①정치적 상황 : 베트남전 패망, 워터게이트사건 발발
- ②경제적 상황 : 풍요 속의 빈곤, stagflation(저성장, 고물가시대)
- ③사회적 상황 : 흑백인종의 문제심화(KKK단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 ④종교적 상황 : 통일교의 등장
- (5)미노우브룩(Minnowbrook)회의(정책지향적 접근)

1968년 9월 미국의 시라큐스(Syracuse) 대학의 주최로 개최된 미노우브룩회의에서 왈도(D. Waldo)의 주도 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 ①왈도(D. Waldo) : 소용돌이시대의 행정
- ②마리니(F. Marini) : 신행정학의 모색과 미노우브룩회의의 전망
- ③프레드릭슨(H. G. Frederickson) : 1970년대의 주민통제

문3.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 ② 면허 방식에서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 ③ 보조금 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 ④ 구입증서(voucher)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 ⑤ 계약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①. 정부실패를 극복하기위한 민영화 방안에 대한 문제 이다

①은 자원봉사자(volunteers)방식이다. 자조활동(self service)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수익자와 공급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로써전과자의 범죄 예방활동 등이 있다

문4.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eber는 관료제를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하고 있다.
- ②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합리성은 본질적 행정가치보다는 수단적 행정 가치에 포함된다.
- ④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⑤ Diesing의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정답 ④. ④는 Simon의 내용적 합리성에 해당된다.

<합리성의 유형>

㉠ 만하임(K. Mannheim)의 분류

- ㉡ 실질적 합리성 : 어떤 특정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요소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충동이나 본능이 아닌 지성적 통찰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고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지성적인 사고작용 자체는 실질적인 합리성을 띠게 된다.
- ㉢ 기능적 합리성 : 정해진 목표의 성취에 순기능적 행위를 할 때에 나타나는 합리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행위는 기능적인 면에서 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 사이먼(H. A. Simon)의 분류

- ㉤ 절차적 합리성 : 당면한 문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해 보는 과정상에 있어서 의식적·지적·인지적 사유를 말하며, 조직을 집단적 협동성을 갖는 이성적 노력으로 인식하는 사이먼(H. A. Simon)은 특히 이러한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실질적 합리성과 유사).
- ㉥ 내용적 합리성 : 만하임(K. Mannheim)의 기능적 합리성과 유사한데, 이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목표성취에 있어서 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를 말한다.

문5. 다음 정책유형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 구성정책은 조세, 병역, 물자수용,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② 분배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 ③ 상징정책은 국민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 ④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등을 본능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
- ⑤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정답 ①. ①은 추출정책으로써 조세, 병역, 노역 등과 같이 국내적·국외적 환경으로부터 물적·인적 자원을 추출·동원해 내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문6.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회귀모형
- ② 시계열자료분석
- ③ 투입-산출 분석
- ④ 계획의 평가검토기법(PERT)
- ⑤ 경로 분석

정답 ②. 미래예측기법은 투사, 예견, 추측이 있다. 인과 관계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예견에 해당한다. ②는 투사에 해당한다

< 미래예측기법의 유형>

(1) 투사(projection)

- ①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경향을 장래로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투사인데, 이는 미래에 대해 결정론적인 주장을 하며 방법론적 진술이나 유사한 사례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 ② 과거의 경험·기록·사례·문헌조사에 의존하는 귀납적 논리이다.
- ③ 보외적(補外的) 예측이다(과거치를 그대로 연장시키는 추세법).

- ④ 기법으로는 시계열분석, 흑선기법, 최소자승경향추정법, 선형경향추정, 비선형시계열, 자료변환 등이 있다.
- (2) 예견(이론)
- ① 예견은 명백한 이론적인(인과관계) 가정을 통하여 예측이 이루어지는 연역적 기법이다. 예견의 본질은 어떤 하나의 관계에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원인과 결과를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며, 유사한 과정이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추를 탐색하는 것이다.
- ② 예견의 기법에는 경로분석, 투입-산출분석, 선형계획, 회귀분석, 시뮬레이션, 마코브곡선, PERT 등이 있다.
- ③ 양적인 과학적 기법이다.
- (3) 추 측
- ① 추측은 미래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관적인 진술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정책 관련 기법집단에 의한 내재적인 통찰력, 창의력 및 암묵지 등의 미래에 대한 지시적 주장에 의존한다.
- ② 추측의 기법에는 상호영향분석, 실행가능성분석,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등이 있다.
- ③ 질적·주관적 기법이다.

문7. 다음 동기부여이론 내용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

- ① Theory X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소하는 전통적인 관리접근법이다.
- ② Maslow는 낮은 순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순위의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 ③ Herzberg의 동기요인은 책임감, 정책과 행정, 업무조건, 인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범위를 3가지로 수정하여 요구좌절에 따른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dams는 형평성의 비교과정을 투입에 대한 만족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③. 정책과 행정, 업무조건은 위생요인(불만요인)이고, 책임감, 인정은 동기요인(만족요인)에 해당한다.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⑦Herzberg의 이론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조직생활에서 만족을 주는 요소와 불만을 주는 요소는 서로 다르다고 한다. 불만요인의 제거는 단순히 불만을 없애는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만 있으며, 동기를 유발시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⑨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이며,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⑩불만족요인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직 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 환 경	* 직무자체
* 정책이나 목표	* 성취감
* 보 수	* 인정감
* 작업조건	* 보람 있는 일
* 대인관계	* 책임의 증대나 승진

문8. 지식관리의 효과가 아닌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 ③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촉진
- ④ 조직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촉진
- ⑤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정답 ④. 조직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BPR) 촉진은 행정업무처리재설계에 관한 설명이다.

구 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개인자질	일상적 기량과 경험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공유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편린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 재산화
지식활용	정보, 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구축

문9. 대표관료제의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수집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 ③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 ④ 역차별의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 ⑤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

정답 ③. 하향식평준화로써 이때에는 실적제와 상치되어 사회적형평성에 는 기여하지만 능률성은 저하된다

문10. 다음중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내부승진 기회의 확대로 공직자의 사기제고에 기여한다
-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 ④ 임용의 융통성을 증대한다
- ⑤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게 한다

정답 ②. ②는 폐쇄형 인사관리의 장점이다.

구 분	장 점	단 점
개방형	①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② 인사행정에 있어 기관장이 적절한 영향력과 리더십 발휘 ③ 행정조직의 침체화, 관료주의화 방지 ④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 ⑤ 충원임용의 형평성 기여 ⑥ 경쟁원리 도입, 전문성 증대	①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 ② 행정의 안정성 저해(신분보장이 약함) ③ 충성심 저하 ④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이직률 증가) ⑤ 재직자의 사기 저하 ⑥ 회전문 인사로 인한 정실임용(나눠먹기식 인사)
폐쇄형	① 재직자의 사기양양(승진의 기회 확대) ② 직업공무원제도 확립(공무원의 이직률이 낮아짐) ③ 행정능률 향상(공무원의 충성심 발휘) ④ 행정의 안정성 유지(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	① 우수한 인재의 등용이 곤란 ②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곤란 ③ 행정조직의 침체화, 관료주의화 우려 ④ 관료에 대한 민중통제 곤란 ⑤ 기관장의 영향력과 리더십 발휘가 곤란

문11.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①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 ② 행정윤리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 ③ 공무원은 국민일부나 특수계층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 ④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⑤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여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정답④. ④는 소극적 측면으로 이해된다. 행정윤리를 소극적으로 파악할 경우 부정부패의 방지와 같이 특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관점과, 적극적 의미로 파악할 경우에는 공익성, 봉사정신, 대응성과 적극적 책임성 등이 강조된다.

문12. 예산과정에서 점증주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점증주의는 결정자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한다.
- ② 총체주의와 달리 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기존의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대안을 검토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④ 결정상황을 제약하는 비용, 시간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시키자는 것이다.
- ⑤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법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정답 ⑤. ⑤는 예산과정에서 합리주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써 PPBS-ZBB가 해당한다.

(1) 합리모형(총체주의 결정)

관리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예산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따를 때 그 절차는 바람직한 목표의 설정, 대안의 모색, 각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추계 및 비교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에 의해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기하는 예산편성기법에는 PPBS(계획예산)와 ZBB(영기준 예산)가 있다.

(2) 점증모형(정치적 접근법)

예산과정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문제이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 입장의 기본적 내용은 예산결정이란 전략과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치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는 LIBS(품목별 예산)와 PBS(성과주의 예산)를 들 수 있다.

< 예산의 경제원리(합리주의)와 정치원리(점증주의) 비교>

구 분	경제원리(합리주의)	정치원리(점증주의)
초 점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할 것인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목 적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 최적)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방 법	분석적 기법(비용-편익분석 등), 체계적 접근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과정적 접근
행동원리	시장(최적화) 원리	게임(균형화) 원리
갈 등	갈등저하? 순수공공재? 분배정책	순공공재, 재분배정책
적용분야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미시적 문제	계속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거시적 문제

문13. 자본예산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③ 인플레이션기에 적절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 ④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다.
- ⑤ 정부는 자본예산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답 ③. 자본예산제도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

< 단 점 >

- ① 적자재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 : 경제지출의 적자를 은폐하거나 혹은 무리한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기 쉽다.
- ② 공공사업에의 치중 : 자본예산은 재정부담이 안되므로 자칫하면 선심성 공공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할 우려가 있다.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재에만 투자한다는 것이다.
- ③ 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 : 자본예산은, 특히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곤란하다. 시설재를 위한 투자는 국채발행에 의하여 충당하여도 좋다는 관념이 확립되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 ④ 적자예산편성에 치중 : 부채를 동원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데 치중할 우려가 있다.
- ⑤ 계정구분의 불명확성 : 정부예산을 경상계정·자본계정으로 구분하지만, 두 계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문14. 아래의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 방안을 전부 포함한 것은?

-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 ㄹ. 청와대에 의한 통제
- ㅁ.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 ㅂ. 시민에 의한 통제
- ㅅ. 여론과 매스컴
- ㅇ. 옴부즈만 제도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ㅇ
- ⑤ ㄱ, ㄴ, ㅂ, ㅅ, ㅇ

정답 ⑤. 스웨덴의 경우 입법부소속으로 외부통제, 우리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므로 내부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소속이다.

<길버트(Gilbert)>

① 외부·공식적 통제, ② 외부·비공식적 통제, ③ 내부·공식적 통제, ④ 내부·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제주체와 작용방향에 따라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전개하고자 한다.

문1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이 아닌 것은?

- ① 자체평가중심의 평가체제이다.
- ②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이다.
- ③ 성과관리 강화이다.
- ④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설치이다.
- ⑤ 국무총리실의 상위평가 기능 강화이다.

정답 ①. ⑤. 논란이 있을수 있는 문제이다, 최근 출제자의 의도로 볼 때 ①번이 정답에 가까워 보인다.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명박 정부 등장시 인수위원회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분야라고 강의를 강조하던 분야이다, 요지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 정책감사를 수행하다보니 업무의 중복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여 감사원의 정책감사기능을 국무총리실에 이관시키자는 내용이었다.

(2) 각 기관마다 수행해오던 자체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다(ex: 한국도로 공사가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⑤번의 경우 ‘재평가’라 하면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근거로써 제17조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메타평가(meta evaluation)

- ① 평가종합, 평가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결산이라고 한다.
- ② 이미 평가했던 평가를 기존의 평가자가 아닌 제3의 기관(상급기관,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해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했던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정책엘리트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에 관계하지 않은 외부인에 의한 민주적인 평가와 관련된다.
- ④ 구체적인 지표구성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균형있게 확보해야 한다.
- ⑤ 평가대상의 특성을 표준화시켜 지표를 구성하는 기존의 측정방식에 대한 보완적 방법이다.
- ⑥ 평가에 사용된 방법의 적정성, 사용된 자료의 오류여부,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는 기법을 말한다.<참행정학,p.39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을 제7928호 신규제정 2006. 03. 24.법을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법을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법을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지방자치단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라. 공공기관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제7조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문16.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기능중복의 제거
- ② 의사전달체계 수정
- ③ 관리과학활용
- ④ 책임의 재규정
- ⑤ 분권화의 확대

정답 ③. Leavitt는 조직의 주요 변수를 구조, 과업, 기술, 인간(행태)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은 관리기술을 통하여 조직 내 운영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하는 기술적 접근에 해당된다

문17. 균형성과평가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적 관점
- ② 내부업무 과정적 관점
- ③ 고객의 관점
- ④ 환경적 관점
- ⑤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정답 ④. 두 문자로 암기방법 제시, 철수야 ‘학과 재고’라고

<균형성과 관리(BSC ; Balanced Scorecard)>

(1) BSC(Balanced Scorecard)란 균형성과표 또는 통합성과관리라 하는데 1992년 미국 하바드대 카플란과 노턴(Kaplan & Norton) 교수가 만든 경영성과 관리 시스템으로서 전통적인 재무분석은 과거의 실적을 보는 것이므로 현재나 미래의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대두되었다.

(2) 미국의 클린턴 정부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호주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3) 균형성과 관리(Balanced Scorecard)는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경영시스템으로서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4) 4대 지표

① 학습, 성장 : 조직의 변화·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창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4가지 관점 중에서 가장 하부구조에 해당

② 재무 :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부터 위험·성장·수익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며 기업의 성과지표라 할 수 있으며 성과지표의 최종목표이다.

③ 고객 :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차별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수립

④ 내부프로세스(과정) : 고객과 주주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내부에 업무처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다.

문18.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예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지역간 균형발전
- ㄴ. 포장된 도로의 비율
- ㄷ. 도로포장을 위해 이용된 중장비의 규모
- ㄹ. 차량의 통행속도 증가율

- ① ㄱ-영향, ㄴ-투입, ㄷ-산출, ㄹ-결과
- ② ㄱ-영향, ㄴ-산출, ㄷ-투입, ㄹ-결과
- ③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 ④ ㄱ-결과, ㄴ-산출, ㄷ-영향, ㄹ-투입
- ⑤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정답 ②. ㄱ은 조직 혹은 사업의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의미, ㄴ. 산출(output)은 수행된 활동 자체보다는 생산과정과 활동에서 창출된 직접적인 생산물을 의미, ㄷ. 투입(input)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ㄹ은 산출물이 창출한 조직환경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성과지표

문19.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⑤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1)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서 그 소관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은 지방자치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전국적인 획일적 업무처리에는 용이한 편이다.

(3)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등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거나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서, 세관, 우체국, 국세청 산하의 지방국세청·세무서 등이 있다

문20.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 ① 시·도, 시·군 간 협력 행정이 미흡하여 갈등을 증대시킨다.
- ② 도와 시·군 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③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통제기능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다.
- ④ 동일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
- ⑤ 다층구조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의사전달 왜곡이 발생한다.

정답 ②. 우리는 복층제에 해당한다.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포괄적 예시주의로 인해 예시규정이 모호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빈번하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8.02.29 법률 제 8865호 시행일 2008.06.01] <한시법:2013.5.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제·개정의 원칙)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법·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의 추진과 함께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